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57
----------	-----

2022년 9월 28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8월 29일 서울특별시장
2. 회부일자 : 2022년 9월 2일
3. 상정일자 : 제314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2년 9월 20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이 공공보건의료정책 수립과 시립병원의 지속적 혁신·발전을 위한 상시적 컨설팅,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의 싱크탱크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함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제3항,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3(출자·출연의 동의) 및 제22조의4(출자·출연 동의안)에 의거 공공보건의료재단 출연 여부에 대해 시의회 사전 동의 필요

2. 주요내용

가. 출연 개요

-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재정지원)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출연금 교부)

나. 주요사업

-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개발 및 분석, 종합 계획 수립의 지원
- 서울특별시립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운영 지원, 컨설팅 및 통계 구축
-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 관련 사업 개발·보급
- 시립병원, 보건소 등 종사자 교육훈련
- 생애주기별, 성별 공공보건의료서비스 발굴
- 국내외 공공보건의료자원 연계·교류 및 민간 보건의료자원과 협력체계 구축
- 시립병원, 보건소,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공동사업 개발 및 운영
- 시장이 위탁하는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 관련 사업 등

다. 출연의 필요성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업무를 체계적, 전문적으로 지원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
-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정책 개발
-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양질의 보건의료자원 연계·협력을 통한 서울형 보건의료체계 구축 등

라.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2023년 예산 (안) : 5,872,558천원

○ 산출근거

(단위 : 천원)

연 번	세부내역	2023년 예산 (안)	비 고
	합 계	5,872,558	
1	인 건 비	3,422,001	
2	운 영 비	2,450,557	
3	사 업 비	-	

※ '23년도 사업비는 전년도 사업비 수준(1,430백만원)으로 '22년도 잉여금(추정치 1,690백만원) 활용 편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3 (출자·출연의 동의) 및 제22조의4(출자·출연 동의안)

제22조의3 (출자·출연의 동의)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2조의4 (출자·출연 동의안) 시장이 제22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출자·출연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출자·출연 사무명
2. 출자·출연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출자·출연 사무 내용
4. 출자·출연 기관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6. 이사회 회의록
7. 결산 보고서
8. 그 밖에 출자·출연 심의에 필요한 사항

나. 예산조치 :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서울특별시 공
공보건의료재단」 출연금 반영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붙임 2022년도 공공보건의료재단 출연금 감사보고서 1부. 끝.

※ 작성자 :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정책팀 이진성 (☎ 2133-7509)

Ⅲ.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지향)

1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공공보건의료재단’이라 함)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편성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1) 및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32)에 의거 사전절차로서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출연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2 공공보건의료재단 현황

가. 설립 목적 관련

- 공공보건의료재단은 시민의 보건의료 수요에 부응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수립의 지원과 서울특별시립병원, 보건소 및 지역사회 의료자원의 협력체계 구축, 관련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³⁾ 위해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1)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3(출자·출연의 동의)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보건의료 수요에 부응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수립의 지원과 서울특별시립병원, 보건소 및 지역사회 의료자원의 협력체계 구축, 관련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7년에 설립되었으며, 이 조례 제4조에서는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사업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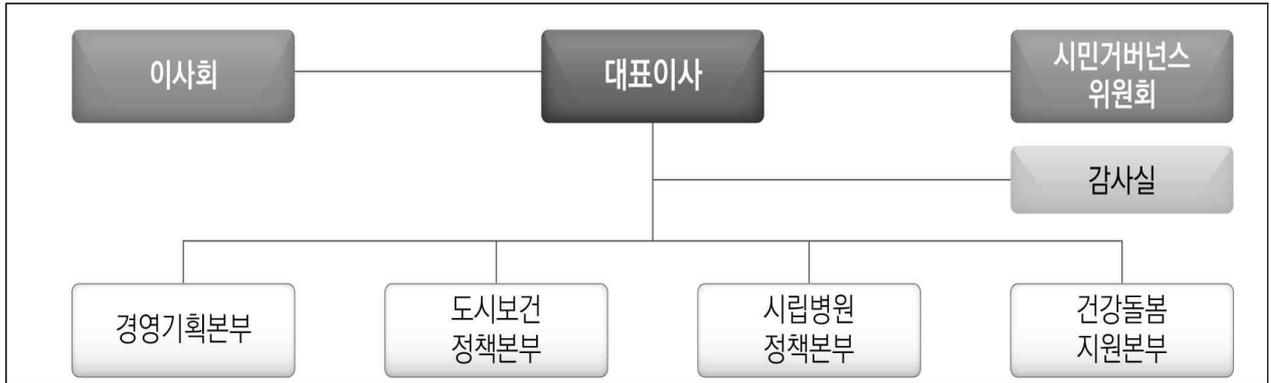
〈표-1〉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사업 범위

1.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개발 및 분석, 종합계획 수립의 지원
2. 서울특별시립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운영 지원, 컨설팅 및 통계 구축
3.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 관련 사업 개발·보급
4. 시립병원, 보건소 등 종사자 교육 훈련
5. 생애주기별, 성별 공공보건의료서비스 발굴
6. 국내·외 공공보건의료자원 연계·교류 및 민간 보건의료자원과 협력체계 구축
7. 시립병원, 보건소,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공동사업 개발 및 운영
8. 시장이 위탁하는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 관련 사업
9.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나. 조직 및 인력 관련

- 공공보건의료재단은 4본부(경영기획본부, 도시보건정책본부, 시립병원정책본부, 건강돌봄지원본부)와 1실(감사실)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은 53명이며 현원은 52명임(2022년 7월 1일 기준).

〈표-2〉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조직



〈표-3〉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인력

(단위 : 명, '22.7.1.기준)

구 분	계	대표이사	1급	2급	3급	4급	5급
정 월	53	1	4	6	11	16	15
현 월	52	1	2	5	12	18	14

다. 부서별 주요 업무

- 공공보건의료재단의 부서별 주요 업무를 보면, 도시보건정책본부는 공공의료 정책연구 및 보건의료 종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시립병원정책본부는 시립병원 전문지원 등에 관한 사항, 건강돌봄지원본부는 보건의료분야 전달체계 확대 등에 관한 사항, 경영기획본부의 경우, 중장기 전략기획 및 예산편성 등 행정적인 부분을 관리하고 있음.

〈표-4〉 공공보건의료재단 부서별 주요 업무

부서명	주요 업무
도시보건정책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정책수립을 위한 공공의료 정책연구, 근거기반 고도화 등에 관한 사항 ○ 보건의료 종합계획 수립 및 사업 평가·모니터링·확산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 관련 사업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시립병원,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인력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시립병원정책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립병원 운영관리 및 정책에 대한 전문적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 시립병원 성과평가 및 컨설팅·경영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 시립병원 인사·노무 및 의료기기 등 자원 관리에 관한 사항 ○ 시립병원 이용경험 향상 서비스디자인 및 시설·건축에 관한 사항
건강돌봄지원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의료 거버넌스 플랫폼 및 지역사회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국내외 공공 및 민간보건의료 자원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 보건의료분야 전달체계 확대 및 시민참여 구조화·활성화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중심 사업 개발 및 보급·지원에 관한 사항
경영기획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장기 전략기획, 경영평가, 사업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 예산편성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조직·인사·노무·복무·직원평가·후생복지·교육·급여에 관한 사항 ○ 자금 및 기금 운용, 예산집행 및 결산,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자료: 공공보건의료재단 주요업무 보고(2022. 7.) 제311회 시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라. 예산 현황

- 2022년 공공보건의료재단 예산은 83억 1200만원(인건비 32억 6000만원, 운영비 24억 3600만원, 사업비 15억 5000만원, 예비비 10억 6600만원)으로 2021년 66억 8200만원 대비 증가(24.4%)하였습니다.
- 2023년 공공보건의료재단 예산(안)은 58억 7300만원(인건비 34억 2200만원, 운영비 24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는데, '22년도 잉여금(추정치 16억 9000만원)을 활용하여 '23년도 사업비를 전년도 사업비 수준(사업비 14억 3000만원)으로 편성할 예정이므로, 이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여짐(예비비 제외).

〈표-5〉 공공보건의료재단 예산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1년	증 감	증 감 (%)
계	8,312	6,682	1,630	24.4
인 건 비	3,260	3,058	202	7
운 영 비	2,436	2,269	167	7
사 업 비	1,550	1,330	220	17
예 비 비	1,066	25	1,041	4,164

마. 주요성과

-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지난 추진 성과를 보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서울형 유급병가⁴⁾’, ‘환자안심병원⁵⁾’ 등 선도적인 건강정책의 개발과 정착에 공헌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서울시 건강정책 종합계획(지역보건의료계획,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지원 및 시민건강국 보건 의료정책과의 주요과제 개발 및 실행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남⁶⁾.

이는 시민의 보건의료 수요에 부응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설립 및 운영 목적⁷⁾과 부합하

4) 자료: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2022. 2.)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지원단) 10년 발간사. p35.

- 아프면 쉴 수 있는 서울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아파도 유급병가가 없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질병을 키우게 되는 근로취약계층 가운데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들에게 입원이나 검진 등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연간 최대 14일까지 서울시 생활임금을 지원하는 제도임.

5) 자료: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2022. 2.)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지원단) 10년 발간사. p89.

- 보호자 없는 ‘환자안심병원’은 별도의 보호자나 사설 간병인 없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한 팀이 되어 환자를 돌보는 간호·간병 서비스로 전국 최초로 시립병원에 도입하여 운영해왔으며, 2015년부터는 전국사업으로 발전함.

6) 자료: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2022. 2.)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지원단) 10년 발간사. p84.

7)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보건의료 수요에 부

는 것으로 보여짐.

3 출연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지방재정법」 제18조8)에서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공공기관⁹⁾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공보건의료법」 제22조¹⁰⁾에서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운영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나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용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수립의 지원과 서울특별시립병원, 보건소 및 지역 사회 의료자원의 협력체계 구축, 관련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8)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9)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10) 「공공보건의료법」 제22조(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운영) ① 시·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운영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나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 운영 및 운영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또한,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국가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황임.

- 「지방재정법」 제18조¹¹⁾ 및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¹²⁾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출연은 법령과 우리 시 조례에 출연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공보건의료재단의 출연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종합의견

- 공공보건의료재단에 대한 출연은 법령과 우리 시 조례에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공공보건의료법」 제3조제4항¹³⁾에서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음.

11)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2)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출연금 교부)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13) 「공공보건의료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 ③ <중략>.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157
----------	-----

제출년월일 : 2022년 8월 29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이 공공보건의료정책 수립과 시립병원의 지속적 혁신·발전을 위한 상시적 컨설팅,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의 싱크탱크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2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함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제3항,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3(출자·출연의 동의) 및 제22조의4(출자·출연 동의안)에 의거 공공보건의료재단 출연 여부에 대해 시의회 사전 동의 필요

2. 주요내용

가. 출연 개요

-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출연금 교부)

나. 주요사업

-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개발 및 분석, 종합 계획 수립의 지원

- 서울특별시시립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운영 지원, 컨설팅 및 통계 구축
-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 관련 사업 개발·보급
- 시립병원, 보건소 등 종사자 교육훈련
- 생애주기별, 성별 공공보건의료서비스 발굴
- 국내·외 공공보건의료자원 연계·교류 및 민간 보건의료자원과 협력체계 구축
- 시립병원, 보건소,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공동사업 개발 및 운영
- 시장이 위탁하는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 관련 사업 등

다. 출연의 필요성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업무를 체계적, 전문적으로 지원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
-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정책 개발
-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양질의 보건의료자원 연계·협력을 통한 서울형 보건의료체계 구축 등

라.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2023년 예산(안) : 5,872,558천원
- 산출근거

(단위 : 천원)

연 번	세부내역	2023년 예산(안)	비 고
	합 계	5,872,558	
1	인 건 비	3,422,001	
2	운 영 비	2,450,557	
3	사 업 비	-	

※ '23년도 사업비는 전년도 사업비 수준(1,430백만원)으로
'22년도 잉여금(추정치 1,690백만원) 활용 편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3
(출자·출연의 동의) 및 제22조의4(출자·출연 동의안)

제22조의3 (출자·출연의 동의)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2조의4 (출자·출연 동의안) 시장이 제22조의3에 따라 제출하는 출자·출연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출자·출연 사무명
2. 출자·출연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출자·출연 사무 내용
4. 출자·출연 기관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6. 이사회 회의록
7. 결산 보고서
8. 그 밖에 출자·출연 심의에 필요한 사항

나. 예산조치 : 2023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서울특별시 공공
보건의료재단」 출연금 반영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붙임 2022년도 공공보건의료재단 출연금 감사보고서 1부. 끝.

※ 작성자 :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정책팀 이진성 (☎ 2133-7509)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재무제표에 대한
감 사 보 고 서

제 5(당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 4(전기) :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이사회 귀중

감사의견

우리는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이하, “재단”)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2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을 포함한 재무제표의 주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 별첨된 재단의 재무제표는 재단의 2021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일반기업회계기준과 재단의 회계규정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의견근거

우리는 대한민국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에 따른 우리의 책임은 이 감사보고서의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단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재무제표감사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회사로부터 독립적이며, 그러한 요구사항에 따른 기타의 윤리적 책임들을 이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경영진은 일반기업회계기준과 재단의 회계규정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재단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을 평가하고 해당되는 경우, 계속기업 관련 사항을 공시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이 기업을 청산하거나 영업을 중단할 의도가 없는 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사용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배기구는 재단의 재무보고절차의 감시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재무제표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목적은 재단의 재무제표에 전체적으로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 표시가 없는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확신을 얻어 우리의 의견이 포함된 감사보고서를 발행하는데 있습니다. 합리적인 확신은 높은 수준의 확신을 의미하나, 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된 감사가 항상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한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왜곡표시는 부정이나 오류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왜곡표시가 재무제표를 근거로 하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면, 그 왜곡표시는 중요하다고 간주됩니다.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일부로서 우리는 감사의 전 과정에 걸쳐 전문가적 판단을 수행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왜곡표시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하며 그러한 위험에 대응하는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합니다. 그리고 감사의견의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합니다. 부정은 공모, 위조, 의도적인 누락, 허위진술 또는 내부통제 무력화가 개입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으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지 못할 위험은 오류로 인한 위험보다 큽니다.
-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감사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와 관련 공시의 합리성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 경영진이 사용한 회계의 계속기업전제의 적절성과, 입수한 감사증거를 근거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 의문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과 관련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우리는 재무제표의 관련 공시에 대하여 감사보고서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이들 공시가 부적절한 경우 의견을 변형시킬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감사보고서일까지 입수된 감사증거

에 기초하나, 미래의 사건이나 상황이 재단의 계속기업으로서 존속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공시를 포함한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표시와 구조 및 내용을 평가하고, 재무제표의기초가 되는 거래와 사건을 재무제표가 공정한 방식으로 표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 계획된 감사범위와 시기 그리고 감사 중 식별된 유의적 내부통제 미비점 등 유의적인 감사의 발견사항에 대하여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1길 11

우 덕 회 계 법 인

대표이사 공인회계사 김 기 범



2022년 2월 4일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서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이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 사이에 첨부된 재단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첨부) 재 무 제 표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 5(당)기

2021 년 01 월 01 일 부터

2021 년 12 월 31 일 까지

제 4(전)기

2020 년 01 월 01 일 부터

2020 년 12 월 31 일 까지

"첨부된 재무제표는 당 재단이 작성한 것입니다."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 김창보

본점 소재지 :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7(와이즈타워) 20 층
(전 화) 02-6386-8300

재 무 상 태 표

=====

제 5 (당)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제 4 (전)기 2020년 12월 31일 현재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단위: 원)

과 목	제 5 (당)기		제 4 (전)기	
자 산				
I. 유 동 자 산		2,054,704,965		2,522,484,116
(1) 당 좌 자 산		2,054,704,965		2,522,484,116
1. 현금및현금성자산(주석3)		1,333,381,226		1,796,674,219
2. 단기금융상품(주석4)		721,323,739		725,809,897
II. 비 유 동 자 산		143,517,484		119,935,959
(1) 유 형 자 산 (주석5)		125,388,077		83,910,446
1. 비품	193,951,960		117,269,060	
감가상각누계액	(72,580,550)	121,371,410	(42,195,281)	75,073,779
2. 시설장치	24,100,000		24,100,000	
감가상각누계액	(20,083,333)	4,016,667	(15,263,333)	8,836,667
(2) 무 형 자 산 (주석6)		18,129,407		20,369,193
1. 소프트웨어		18,129,407		20,369,193
(3) 기타비유동자산		-		15,656,320
1. 임차보증금		-		15,656,320
자 산 총 계		2,198,222,449		2,642,420,075
부 채				
I. 유 동 부 채		133,506,852		132,734,040
1. 미지급금		63,184,880		81,514,190
2. 예수금		70,321,972		51,219,850
3. 미지급비용		-		-
II. 비 유 동 부 채		19,536,536		334,308,966
1. 퇴직급여충당부채		19,536,536		334,308,966
부 채 총 계		153,043,388		467,043,006
자 본				
I. 자 본 금 (주석7)		700,000,000		700,000,000
1. 기본재산		700,000,000		700,000,000
II. 이 익 잉 여 금		1,345,179,061		1,475,377,069
1. 미처분이익잉여금		1,345,179,061		1,475,377,069
자 본 총 계		2,045,179,061		2,175,377,069
부채와 자본총계		2,198,222,449		2,642,420,075

손익계산서

=====

제 5 (당)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 4 (전)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단위: 원)

과목	제 5 (당)기		제 4 (전)기	
I. 사업수익		5,326,876,000		3,909,612,000
1. 이전수입	5,326,876,000		3,909,612,000	
II. 사업비용		5,467,981,825		4,243,725,100
1. 직접사업비용	1,159,076,302		1,286,989,235	
2. 기타 보조금사업 비용	-		-	
3. 관리운영비	4,308,905,523		2,956,735,865	
1) 급여	1,835,069,513		1,467,175,566	
2) 제수당	333,964,520		297,547,950	
3) 퇴직급여	164,761,520		139,321,750	
4) 복리후생비	372,714,060		273,085,196	
5) 보험료	-		164,040	
6) 감가상각비	35,205,269		21,881,591	
7) 무형자산상각비	11,336,566		9,517,210	
8) 지급수수료	305,386,058		328,161,250	
9) 부서운영비	8,013,410		8,370,536	
10) 광고선전비	46,970,000		5,000,000	
11) 교육훈련비	31,504,000		11,356,220	
12) 차량유지비	1,146,261		2,017,700	
13) 도서인쇄비	39,513,290		40,927,679	
14) 업무추진비	22,496,360		29,650,914	
15) 임차료	852,740,450		211,262,578	
16) 통신비	8,155,890		5,875,290	
17) 세금과공과	9,673,520		1,624,850	
18) 소모품비	28,771,606		22,282,105	
19) 수선비	153,365,770		46,735,700	
20) 여비교통비	10,129,500		15,336,110	
21) 회의비	37,987,960		19,441,630	
III. 영업이익		(141,105,825)		(334,113,100)
IV. 영업외수익		12,890,797		18,103,573
1. 이자수익	12,890,797		18,103,573	
V. 영업외비용		-		-
V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28,215,028)		(316,009,527)
VII. 법인세비용		1,982,980		2,493,819
VIII. 당기순이익		(130,198,008)		(318,503,346)

"별첨 주석 참조"

자 본 변 동 표

제 5 (당)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 4 (전)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단위: 원)

과 목	납입자본	이익잉여금	계
2020년 1월 1일 (전기초)	700,000,000	1,793,880,415	2,493,880,415
1. 당기순이익		(318,503,346)	(318,503,346)
2020년 12월 31일 (전기말)	700,000,000	1,475,377,069	2,175,377,069
2021년 1월 1일 (당기초)	700,000,000	1,475,377,069	2,175,377,069
1. 당기순이익		(130,198,008)	(130,198,008)
2021년 12월 31일 (당기말)	700,000,000	1,345,179,061	2,045,179,061

"별첨 주석 참조"

현금흐름표
=====

제 5 (당)기 2021년 01월 0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 4 (전)기 2020년 01월 0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 5 (당)기		제 4 (전)기	
I. 사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97,655,791)		(90,277,049)
1. 당기순이익	(130,198,008)		(318,503,346)	
2.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등의 가산	211,303,355		170,720,551	
가. 감가상각비	35,205,269		21,881,591	
나. 무형자산상각비	11,336,566		9,517,210	
다. 퇴직급여	164,761,520		139,321,750	
3.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등의 차감	-		-	
4. 사업활동으로 인한 자산·부채의 변동	(478,761,138)		57,505,746	
가. 미수금의 감소	-		18,065,300	
나. 미지급금의 증가(감소)	(18,329,310)		33,017,560	
다. 예수금의 증가	19,102,122		27,402,773	
라. 미지급비용의 감소	-		(8,130,307)	
마. 퇴직금의 지급	(94,045,780)		(12,849,580)	
바. 퇴직연금의 납입	(385,488,170)		-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65,637,202)		(64,004,813)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28,928,113		-	
가. 임차보증금의 회수	15,656,320		-	
나. 단기금융상품의 회수	13,271,793		-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94,565,315)		(64,004,813)	
가. 비품의 취득	76,682,900		49,965,020	
나. 소프트웨어의 취득	9,096,780		774,000	
다.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8,785,635		13,265,793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		-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		-	
가. 기본재산의 전입	-		-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		-	
가. 배당금의 지급	-		-	
IV. 현금의 증가(Ⅰ+Ⅱ+Ⅲ)		(463,292,993)		(154,281,862)
V. 기초의 현금(주석9)		1,796,674,219		1,950,956,081
VI. 기말의 현금(주석9)		1,333,381,226		1,796,674,219

"별첨 주석 참조"

주석

제 5(당) 기 : 2021년 12월 31일 현재

제 4(전) 기 : 2020년 12월 31일 현재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1. 재단의 개요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에 소재하고 있으며, 「민법」 제32조 및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정책을 개발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업무를 체계적, 전문적으로 지원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7년 7월 24일에 설립된 비영리 법인입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재단의 재무제표는 재단의 회계규정과 재단의 회계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일반 기업회계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기업 중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하지 아니하는 기업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가. 수익의 인식

재단의 수익은 서울특별시로부터 받는 출연금 등 대가성 없이 수취하는 자금은 이전수입으로 분류합니다. 동 수입은 사업비 등을 집행하는 시점에 발생하는 비용과 대응하여 수익인식 하거나 반환의무가 소멸된 시기에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나.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평가 및 감가상각방법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구입원가 또는 제작원가 및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지출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회복을 위하여 그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또는 부지를 복원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총당부채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지출의 현재가치도 취득원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유형자산을 취득원가에서 아래의 추정내용연수와 감가상각방법에 따라 산정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
비품	5년	정액법
시설장치	5년	정액법

유형자산의 취득 또는 완성 후의 지출이 생산능력 증대, 내용연수 연장, 상당한 원가절감 또는 품질향상을 가져오는 등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고,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인식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무형자산은 당해 자산의 제작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계상하며, 당해 자산의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액을 영(0)으로 하여 5년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며 이에 의해 계상된 상각액을 직접 차감한 잔액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 퇴직급여충당부채

재단은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근속중인 전임직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추계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라. 충당부채와 우발부채

재단은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동 손실의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손실금액을 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과거사건은 발생하였으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여부에 의해서 존재여부가 확인되는 잠재적인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 현재의무가 존재하나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거나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우발부채로 주석기재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하며, 현재가치 평가에 사용하는 할인율은 그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자율입니다. 또한, 충당부채는 보고기간말마다 그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증감 조정하며, 이때 현재가치 평가에 사용한 할인율은 변동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당초에 사용한 할인율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3. 현금및현금성자산 :

당기말 현재 재단의 현금및현금성자산은 1,333백만원이며, 사용 제한된 현금및현금성자산은 없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당기	전기	비고
원화보통예금	1,333,381	1,796,674	신한은행

4. 단기금융상품

당기말 현재 재단의 단기금융상품은 721백만원이며, 사용 제한된 단기금융상품은 없습니다

(단위: 천원)

구분	금리	당기	전기	비고
기본재산 예치금	0.94%	721,324	725,810	정기예금

5. 유형자산 :

당기 및 전기의 유형자산 장부가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 천원)

구분	기초	취득	처분	상각	기말
비품	75,073	76,683	-	(30,385)	121,371
시설장치	8,837	-	-	(4,820)	4,017
계	83,910	76,683	-	(35,205)	125,388

<전기> (단위 : 천원)

구분	기초	취득	처분	상각	기말
비품	42,170	49,965	-	(17,062)	75,073
시설장치	13,657	-	-	(4,820)	8,837
계	55,827	49,965	-	(21,882)	83,910

6. 무형자산 :

당기 및 전기의 무형자산 장부가액의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 천원)

구분	기초	취득	처분	상각	기말
소프트웨어	20,369	9,097	-	(11,337)	18,129

<전기> (단위 : 천원)

구분	기초	취득	처분	상각	기말
소프트웨어	29,112	774	-	(9,517)	20,369

7. 기본재산 :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당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 출연금 700,000,000원입니다.

8. 재무제표의 승인 :

재단의 재무제표는 2022년 2월 28일자 이사회 결의 후 서울특별시장이 승인할 예정입니다.

9. 현금흐름표 :

재단은 현금흐름표상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간접법으로 작성하였으며,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 없는 중요한 거래는 없습니다.

(첨부) 수입지출결산서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제 5 기

2021 년 01 월 01 일 부터

2021 년 12 월 31 일 까지

"첨부된 결산서는 당 재단이 작성한 것입니다."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대표이사 김창보

본점 소재지 :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7(와이즈타워) 20 층
(전 화) 02-6386-8300

수입지출결산서

제 5 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일반회계

(단위 : 원)

구분	예산과목	당초예산	증감액	최종예산(A)	결산액(B)	차이(A-B)
수입 (I)	수입 소계	6,681,995,000	0	6,681,995,000	6,692,902,817	(10,907,817)
	출연금수입	5,326,876,000	0	5,326,876,000	5,326,876,000	0
	기타수입	0	0	0	10,907,817	(10,907,817)
	전년도이월금	1,355,119,000	0	1,355,119,000	1,355,119,000	0
지출 (II)	지출 소계	6,681,995,000	0	6,681,995,000	5,444,034,790	1,237,960,210
	인건비	2,888,957,000	0	2,888,957,000	2,164,365,553	724,591,447
	성과급	168,632,000	0	168,632,000	168,630,000	2,000
	경비	2,269,287,000	0	2,269,287,000	1,971,962,935	297,324,065
	건강정책 동향분석 및 정책개발	480,000,000	(5,000,000)	475,000,000	410,336,334	64,663,666
	시립병원 역량강화	258,000,000	(15,000,000)	243,000,000	226,264,085	16,735,915
	시립병원 성과평가 및 기술지원	242,000,000	10,000,000	252,000,000	215,649,563	36,350,437
	지역사회 건강사업 지원	183,000,000	(21,000,000)	162,000,000	121,853,686	40,146,314
	서울케어 건강돌봄 지원	167,000,000	31,000,000	198,000,000	164,972,634	33,027,366
	예비비	25,119,000	0	25,119,000	0	25,119,000
잔액 (I-II)	수입지출 결산잔액				1,248,868,027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명세

제 5 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 차이내역 총괄표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단위 : 원)

예산회계 구분	예산과목	결산액(A)	재무회계 구분	계정과목	계정잔액(B)	차이(A-B)
예산수입(I)	수입 소계	6,692,902,817	수익(I)		5,337,783,817	1,355,119,000
	출연금수입	5,326,876,000	영업수익	이전수입	5,326,876,000	
	기타수입	10,907,817	영업외수익	이자수익	10,907,817	
	전년도이월금	1,355,119,000				1,355,119,000
예산지출(II)	지출 소계	5,444,034,790	비용(II)		5,467,981,825	(23,947,035)
	인건비	2,164,365,553	영업비용	관리운영비	4,308,905,523	(3,947,035)
	성과급	168,630,000				
	운영경비	1,971,962,935				
	건강정책 동향분석 및 정책개발	410,336,334		직접사업비용	1,159,076,302	(20,000,000)
	시립병원 역량강화	226,264,085				
	시립병원 성과평가 및 기술지원	215,649,563				
	지역사회 건강사업 지원	121,853,686				
	서울케어 건강돌봄 지원	164,972,634				
	예비비	-			-	-
잔액(I-II)	수입지출 결산잔액	1,248,868,027		당기순이익(I-II)	당기순이익	(130,198,008)

2. 차이내역 조정표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단위 : 원)

구분	내용	금액
예산회계 - 수입지출결산잔액	수입지출결산잔액 (가)	1,248,868,027
예산수입 중 조정할 차이		
차감할 차이	1) 전년도 이월금 차감	1,355,119,000
	2) 2021 년도 미지급금(사고이월)	63,184,880
	소계 (나)	1,418,303,880
예산지출 중 조정할 차이		
가산할 차이	1) 비품 취득액 가산	76,682,900
	2) 소프트웨어 취득액 가산	9,096,780
	소계 (다)	85,779,680
차감할 차이	1) 감가상각비 차감	35,205,269
	2) 무형자산상각비 차감	11,336,566
	소계 (라)	46,541,835
재무회계 -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 = (가) - (나) + (다) - (라)	(130,198,008)

감 사 보 고 서

본인은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의 감사로서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제5기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실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합니다.

1. 감사방법의 개요

회계감사를 위하여 회계에 관한 장부와 관련서류를 열람하고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에 대하여서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조, 실사, 입회, 조회, 기타 적절한 감사절차를 적용하여 조사하였습니다.

2. 회계장부 기재에 관한 사항

회계장부에는 기재의 누락 또는 부실기재가 없으며,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기재도 회계장부의 기재와 합치되고 있습니다.

3.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에 관한 사항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는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재단의 재산 및 손익 상태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23일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감사 정 석 윤

